

18. 地方稅法施行令中 改正令(案)立法豫告

내무부 공고 제1997-13호

주 요 골 자

- 가. 고지서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3%로 조정하여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나.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신설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다. 건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건축법과 일치시키고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작물을 구축물의 범위에 추가함.
-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체인사업·상점가·전문상가 단지·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용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마. 폐차된 사실이 입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함.
- 바.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를 추가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안의 임야를 포함하여 사권제한 정도가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이 이루어 지도록 함.

사. 농어민 후계자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 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함.

아. 새마을금고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때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세 기준을 명백히 하여 과세대상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